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10므4699(본소) 이혼  
2010므4705(반소) 이혼등  
2010므4712(병합) 손해배상(기)

원고(반소피고), 피상고인 겸 상고인

전○○

주소 부천시 ■■■■■■■■

등록기준지 서울 ■■■■■■■■

소송대리인 생략

피고(반소원고), 상고인 겸 피상고인

박□□

주소 부천시 ■■■■■■■■

송달장소 부천시 ■■■■■■■■

등록기준지 서울 ■■■■■■■■

사 건 본 인

1. 박◇◇

2. 박△△

사건본인들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다.



본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로 인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의 소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.

그럼에도 원심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이유 설시도 없이 위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.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.

#### 나. 박■■■ 지분의 명의신탁에 관하여

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, 화성시 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 000-2, 000-3, 000-4, 000-7의 토지 중 각 2849분의 995지분 및 같은 리 000-2 지상 건물은 피고(반소원고.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가 그의 동생인 박■■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.

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심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좇은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.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## 2.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

### 가. 주식회사 ◆◆ 관련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관하여

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(이른바 '1인 회사')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.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,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. 따

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.

원심은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가 주식회사 ◆◆을 실질적으로 단독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위 회사가 소유하는 화성시 ■■■ 000-2, 000-3, 000-4, 000-7 토지의 각 2849분의 859지분, 같은 리 000-1, 3 지상 A동 및 B동 건물 및 부천시 ■■■ 소재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,500만 원을 바로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켰다.

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특별한 사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.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.

나.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

재산분할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나아가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등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다. 재산분할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상고에 관하여

피고는 상고취지로 원심판결의 전부 파기를 구하고 있으나,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에 관한 주장만이 있을 뿐 나

